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5일, 염태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
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3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의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염태영의원)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촉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는 다수의 인·허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이 공공성·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등 공공목적의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사업의 예측성과 사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저해한다는 규제 요소로 지적되기도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내용 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정절차 개시부터 최종 조정까지 최대 180일가량이 소요될 수 있는바,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식은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인·허가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운용상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제2항제3호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인가·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의 협의·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조정”은 구속력 없는 자문 또는 권고로 이해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혼동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협의 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의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당초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운영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기능을 확대한 것임.

따라서, 현행법은 조정 대상 사업의 범위를 ‘민관 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도,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관 합동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이 관여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사업은 물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연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한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조정 대상 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23조에서 인·허가 전담기구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조정위원회 업무 범위에서 인·허가 관련 사항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입법화될 경우 조정대상이 “모든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현실적 여건상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법 제21조제2항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데, 이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신설되는 지원센터의 업무 중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인·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의 협의·조정 등의 경우,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고 재량권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면책 범위로서 “지원센터의 업무 및 처리 결과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면책 범위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으로 최소화하고 있고, “처리 결과”는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 범위를 그 필요성이 높은 “안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으로 구체화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종욱의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위법령 위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위법령 위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함.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으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한다.

안 제23조제2항제1호 중 “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내용의 협의·조정”을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의”를 “등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24조제1항제1호 중 “법령해석”을 “법령해석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조정을”을 “협의 지원을”로, “조사,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절차의 지원”을 “조사 및 사전 검토”로 한다.

안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부동산개발사업의</u>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 ----- ----- <u>사업의</u> ----- ----- ----- ----- ----- ----- ----- ----- -----.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 ----- ----- <u>부동산개발사업의</u>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u>부동산개발사업의</u>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u>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u>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부동산개발사업</u>	4. ----- <u>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u> ----- ----- ----- ----- <u>사업</u>	4. ----- <u>제1호</u> 부터 <u>제3호까지</u> 와 유사한 경우로서 <u>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u> ----- ----- ----- ----- ----- <u>부동산개발사업</u>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 -----. 1. 인가·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허가 등 관련 법령의 해석 3. 인가·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의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1. ----- ----- -----관한----- ----- 2. (개정안과 같음) 3. ----- -----내용에
-------------------------------------	---	--

<u>협 의 · 조 정</u>	<u>관 한 협 의 지 원</u>
4. <u>지방자치단체의</u> <u>인가·허가 등의</u> <u>행정 지원 및 평</u> <u>가</u>	4. ----- ----- <u>등 에</u> <u>관 한</u> ----- -----
5. <u>인가·허가 등</u> <u>관련 제도개선</u>	5. · 6. (개정안과 같 음)
6. <u>그 밖에 부동산</u> <u>개발사업의 신속</u> <u>한 인가·허가</u> <u>등을 위하여 국</u> <u>토교통부장관이</u> <u>정하여 고시하는</u> <u>사항</u>	
③ <u>국토교통부장관</u> <u>은 제2항 각 호의</u> <u>업무를 수행하기</u> <u>위하여 도시계획,</u> <u>지역개발, 건축, 교</u> <u>통, 환경, 법률 분</u> <u>야 등 학식과 경험</u> <u>이 풍부한 관계 전</u> <u>문가를 전문위원으</u> <u>로 위촉할 수 있다.</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④ <u>지원센터의 구</u> <u>성·운영 등에 필</u>	

<u><신 설></u>	<u>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u>제24조(전문기관의 지</u> <u>정 등) ①</u> ----- ----- ----- ----- ----- ----- ----- ----- ----- 1. <u>제23조제2항제2</u> <u>호에 따른 법령</u> <u>해석</u> 2. <u>제23조제2항제3</u> <u>호에 따른 협의</u> <u>· 조정을 위한</u> <u>기초자료의 조사,</u> <u>사전 검토 및 협</u> <u>의 · 조정 절차의</u> <u>지원</u> 3. <u>제23조제2항제5</u> <u>호에 따른 인가</u> <u>· 허가 등 관련</u> <u>제도개선을 위한</u>	<u>제24조(전문기관의 지</u> <u>정 등) ①</u> ----- ----- ----- ----- ----- ----- ----- ----- ----- 1. ----- ----- <u>법령해</u> <u>석의 지원</u> 2. ----- ----- <u>협의</u> <u>지원을</u> ----- ----- <u>조사 및</u> <u>사전 검토</u> 3. · 4. (개정안과 같 음)
--------------------	---	---

	<u>자료의 수집</u> <u>4. 그 밖에 부동산</u> <u>개발사업의 신속</u> <u>한 인가·허가</u> <u>등의 지원을 위</u> <u>하여 국토교통부</u> <u>장관이 정하는</u> <u>사항</u> ② <u>전문기관의 지</u> <u>정 및 지정취소 등</u> <u>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③ <u>국토교통부장관</u> <u>은 예산의 범위에</u> <u>서 전문기관의 업</u> <u>무수행에 필요한</u> <u>비용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지원할 수</u> <u>있다.</u>	
<u><신 설></u>	<u>제25조(적극행정에 대</u> <u>한 면책)</u> ----- ----- ----- ----- -----	②·③ (개정안과 같음) <u>제25조(적극행정에 대</u> <u>한 면책)</u> ----- ----- ----- ----- -----

[illegible]

		<u>조의 개정규정은 20</u> <u>27년 5월 28일부터</u> <u>시행한다.</u>
--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다음에 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허가 등 지원

제22조의2(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가·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허가 등 관련 법령의 해석
3. 인가·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
5. 인가·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
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
2.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제2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u>	4. -----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생략)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u>	<u><삭 제></u>

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

·허가 등 지원

제22조의2(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가·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허가 등 관련 법령의 해석

3. 인가·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

<신 설>

5. 인가·허가 등 관련 제도개
선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
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

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업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신 설>

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허가 등 관련 제도개
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의 지
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
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
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
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
니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u><신 설></u> 2. (생 략)	<u>조정 결과의 이행</u> 2. <u>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u>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u> <u>의 임직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	---